

- ◇ … 올해 천연꿀 시장접근률량 248톤 수입을 오는…◇
- ◇ …10월30일 1차분과 11월5일 2차분을 부산항에 도착…◇
- ◇ …시킬 예정으로 국제입찰 공고에 제시하는 「97 천연…◇
- ◇ …꿀 MMA물량 도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 ◇ …물량에 대한 국내 수요업체의 소요량 구매신청을…◇
- ◇ …기다리고 있으니 희망업체는 본협회에 연락 주시기…◇
- ◇ … 바랍니다.

1. 원산지: 세계 각국

2. 도입물품: 천연꿀(Natural Honey, H. S:0409-00~0000)

*제품의 규격(액체 상태의 꿀)→영문 별첨

△수분: 21. 0%이하 △회분: 0. 6%이하 △산도: 40meq/kg이하

△전화당: 65%이상 △자당: 7%이하 △HMF: 40mg/kg이하

△이성화당: 음성 △인공감미료·타아르색소: 불검출

▲성상

△색깔: 편드색도 측정치 60mm이하

△냄새: 발효에 의한 산취 및 천연꿀 수집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용기(드럼)등 사용에 의한 녹냄새 등 이상한 냄새가 나서는 안됨.

▲천연꿀은 꿀벌이 꽃에서 모은 천연성분 외에 유해물질 혹은 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됨.

3. 포장 및 적재

▲1개의 드럼에 실증량 280kg 이상 300kg 이하를 적재함 (단, 드럼당 무게는 일정해야 함)

▲적재중량: 20피트 콘테이너-17. 5M/T 이하 40피트 콘테이너-20. 0M/T 이하

▲드럼은 새것을 사용하여 수송중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드럼 내부는 위생상 반드시 코팅처리 되어야 함. 또한 드럼의 뚜껑은 샘플채취등 작업에 용이하여야 함.

△내용물 누출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공급자에 구상 청구함.

▲각 드럼에는 채취한지 1년 이 경과하지 않은 단일종류(밀원이 같은 꿀)의 꿀이 들어 있어야 함.

▲Pallet 제작이 필요한 경우, Pallet 규격은 동일해야 하며 Pallet별 밴딩화(고정)하여

(Manufacturing Date: Month, Date, Year.)
- 중량: kg
(Net Weight: Kgs/Drum, Gross Weight: kgs/Drum)
- 수입업체명: 축협중앙회(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1)
(Consignee: NLCF, Seoul,

▲입찰(계약)보증금에 대한 취소불능무담보신용장(Irrevocable Clean credit)은 첨부된 양식과 일치하는 형태로 축협중앙회 국제부를 통해 개설하여야 함.

10. 계약보증금

'97 천연꿀(MMA) 도입조건

수송 및 제작업에 용이해야 하며 각 Pallet에는 동일수량의 드럼을 적재하여야 함.

▲환적 및 갑판위 선적은 금지함.

4. 수송방법: 선박

5. 도착항: 부산

6. 국내 도착후 품질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공급자에게 반품 조치하고 이에 따른 품대 및 제비용도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함.

7. 포장명세서

▲Packing List에는 각 콘테이너당 드럼의 수 및 중량이 표기되어야 함.

8. 원산지표시 및 증명서

▲드럼

△원산지는 지워지지 않는 특수 잉크로 드럼표면에 영문 또는 한글로 표기되어야 함.

(예시: Products of Canada, 원산지: 캐나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곁면에 적당한 크기와 순서로 각 드럼의 표면에 표시되어야 함.

- 제품명: 천연꿀 (Product: Natural Honey)

- 원산지: (Origin:)

- 밀원: (Floral source:)

- 원료명 및 함량: 천연꿀 100% (Product Name and its contents: 100% of Natural Honey)

- 생산자 또는 공급자:

(Producer or supplier:)

- 제조일자: 년 월 일

Korea)

- 영업신고번호: 강동 제 수입 11호

(Business Report No: Kangdong Import No. 11)

- 도착지: 대한민국 부산항 (Destination: Pusan, Korea)

- 보관상 주의: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함.

(The caution for storage: The cargo should be stored in a cool place without sunlight)

▲원산지 증명서에는 제품명, 수량, 생산자, 수출자, 수하인 및 운송특기사항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함.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국가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것어야 함.

9. 입찰보증금

▲공급자/입찰자는 총입찰가의 2%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축협을 수혜자로 하여 축협중앙회 국제부를 통해 미화(US \$)로 지급될 수 있는 취소불능무담보신용장(Irrevocable Clean credit), 은행보증서, 또는 현금의 형태로 입찰개시 전일까지 예치하여야 함.

▲입찰보증금은 입찰개시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입찰안내서의 규정과 조건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수증과 축협의 단순한 진술서만으로도 일람불지급될 수 있어야 됨. 요구된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급자는 입찰자격이 박탈됨.

공급자는 낙찰가의 10% 이상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도착일로부터 3개월 이상 동안 법적 효력이 있는 형태로 예치하여야 함.

11. 가격견적

▲단가는 미화(US \$) 부산항도착 C&F가격으로 견적되어야 함.

▲가격견적

구분	물량	도착일	도착장소
1차	124톤	97.10.30	부산항
2차	124톤	97.11.15	"

▲응찰시 물량별로 꿀의 밀원을 표시하여야 함.

▲원산지는 생산국명을 표시하여야 함(예: 프랑스가 원산지인 경우 EC 혹은 Europe이 아니라 France로 표기되어야 함).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응찰시 해당제품 샘플(최소 500g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12. 입찰방법: 국제 공개 경쟁입찰

13. 낙찰자 결정

▲도입조건에 부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수입천연꿀구매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격, 맛, 향, 색상, 녹냄새, 결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종 낙찰업체를 결정함.

- 구매심의위원회 구성: 7명 (농림부 1, 축협중앙회 1, 양봉협회 1, 학계 1, 조합 2)

- 구매심의위원회 운영요령

방역사업단은 경기 4개소, 강원 2개소, 충북 3개소, 충남 8개소, 전북 4개소, 전남 5개소, 경북 2개소, 경남 6개소, 제주 2개소 등 36개소이며 이들에 대해 선개소당 4천2백만원씩 총 15억2천4백만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가축질병 공동방역사업단은 99년까지 지역별 축종별로 250개 사업단이 구성되어 방역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가축질병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질병발생시 초기단계에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활동하며,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가축방역에서 생산자단체 주도의 자율방역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방역사업단에는 기동방역차량, 예방약보관냉장고, 소독기등 방역장비를 갖추도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 별도로 정함.

14. 검사

▲수출국에서의 검사(1차검사)

△선적전 공급자는 축협에서 지정한 검수원이 제품의 상태(냄새, 색깔, 포장형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수검준비(검사장소 안내 및 검수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포함)를 철저히 해야 하며 검수원의 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꿀에 대하여는 제외시킬 수 있음.

△검사는 수출국의 양봉협회 등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증명서(수량포함)에 의함.

△입찰시 제시한 견본과 동일해야 함.

▲도착지에서의 검사(2차검사)

△물품 도착후 품질검사는 한국의 공인검사기관 및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의해 종결되며, 동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시는 공급자에 반품조치하고 반품제비용도 공급자가 부담함.

△수출국에서 1차검사가 합격받았을 지라도 도착지 2차검사에서 불합격 받는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도착지 검사를 최종 기준으로 함)

15. 도착

▲도착일: 제11항 『나』호에 정한 일자 이내

▲제품이 계약도착일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축협은 1일 Invoice Value의 0.1%를 자체 상금으로 부과함.

공급자는 제품사양, 모선명, 수량, ETD, ETA 및 Invoice Value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는 Shipping Schedule를 최소한 선적 3일전에 축협에 통보하여야 함.

16. 품대지불

품대지급은 물품이 국내 도착한 후 한국의 공인검사기관에서 제2항에 의한 규격과 제14항에 의한 도착지 검사에 합격하였을 시 다음 사항이 있는 선적서류에 의해 Invoice Value 100% 해당 금액이 취소불능신용장으로 지불될 것임.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중량명세서 △품질증명서 - 공인검사기관 발행) △식검증 △현지검수확인증

17. 보상(구상)

▲제품수량은 한국의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에 의해 도착항에서 종결됨

▲공급자는 국내 도착후 착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을 때, 포장의 불완전에 의해 제품에 손상이 생겼을 때,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벌칙금이 부과되었을 때, 국내 법령의 위반으로 벌과금이 부과되었을 때 및 기타 계약조건 위배로 축협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축협에서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함.

18. 기타사항: 축협중앙회의 계약규정에 따름.

가축방역전진대회겸 공동방역사업단 발대식 개최 전국민간자율 가축공동방역사업단 금년중 50개, 99년까지 250개로 발족시켜

지난 7월11일 농림부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97 가축방역전진대회」를 개최하고 50개 가축공동방역사업단의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시채 농림부장관, 김태식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위원장 등과 가축공동방역사업단 참여농가, 가축위생시험소 및 축협조합 대표 등 500여명의 관계관이 모여 2003년까지 돼지콜레라, 뉴캣슬, 오제스키병 등 주요 질병을 없애기로 결의하였다.

정시채 장관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간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은 1조원대에 이르고, 특히 지난 3월 대만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전체 1천1백만두의 사육돼지 중 4백60여만 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를 거울로 삼아 축협, 가축위생시험소 등 일선가축방역 담당기관은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지도, 예찰 및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정장관은 『가축방역사업단이 오늘 발족하게 된 것도 바로 이같은 취지에 의한 것』이라며 『농림부는 앞으로 매년 가축질

병 발생실적을 평가, 그 결과를 축산사업지원대상 결정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면 대회사 참조)

김태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입개방 시대에 가축질병 근절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늘 가축방역전진대회와 함께 가축질병공동방역사업단 발대식이 열린 것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가축방역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차로 선정된 가축질병